

2023학년도

계약학과 모집 요강



목포과학대학교
MOKPO SCIENCE UNIVERSITY

■ 계약학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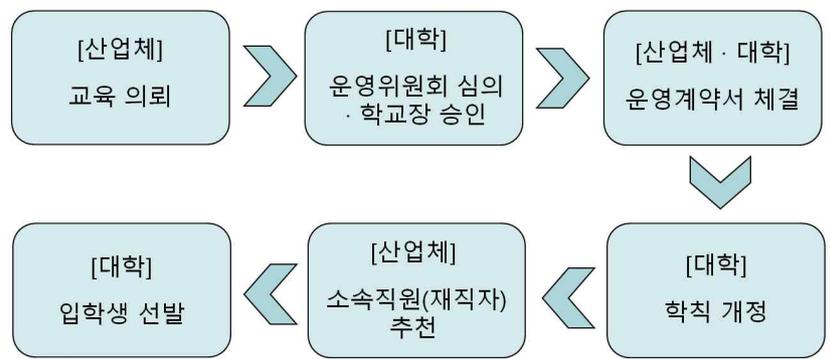
1. 관련 법령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에 의한 직업교육훈련과정 등의 설치·운영)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운영 등) 및 제9조(계약학과 등의 공동운영)

2. 계약학과 유형 : 재교육형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2호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교육을 위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의 계약학과

3. 계약학과 설치·운영 과정



4. 산업체의 범위 : 다음 ①~④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 ②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이상인 사업체
 - ③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④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이하 "사업주 단체"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이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음
- ※ ①~④ 중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는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음

■ 모집 학과 및 인원

구분	계열	모집학과	수업연한	주.야	모집정원	학위
계약학과	인문사회	복지융합과	2	야간	20	전문학사
	공학	정원조경과	2	야간	20	전문학사

■ 지원자격

- 다음 ①~④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①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산업체에 입학일(2023.3.2.) 기준 10개월 이상** 재직 중인 사람
 ※ 복수의 사업장을 가진 산업체의 학생은 재학기간 동안 대학과 직선거리 50km 이내 소재한 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학생 자격이 유지됨
- ② 우리 대학과 협약 체결된 산업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 ③ 4대 사회보험 가입자
- ④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전형일정

구분	일정	비고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23.2.1.(수)~23.02.10.(금) 18:00	방문, 우편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합격자 발표	'23.02.14.(화)	홈페이지, 개별통보
등록 기간	'23.02.16.(목)~02.21.(화) 16:00	개인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은행납부
추가모집 및 등록	'23.02.22.(수)~02.28.(화) 16:00	개인별 가상계좌 또는 지정은행납부

※ 모집인원의 결원에 따라 추가 모집함.(추가모집은 2023. 02. 28일까지 등록 마감)

■ 지원방법

접수 및 문의처	주소	전화	팩스
신안군청 행정지원과	전남 신안군 압해읍 천사로 1004	061-240-8228	061-270-2546
목포과학대학교 교무입학처	전남 목포시 영산로 413-1	061-270-2702	061-273-7552

※ 방문 또는 우편 접수만 가능함.(우편 제출 시 필히 등기우편으로 제출)

※ 대학 졸업 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증명서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전 성명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원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접수 지원 시 관련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개인	계약학과 입학원서(우리대학 양식)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각 1부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해당자만 제출)
	재직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산업체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계약학과 입학 추천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산업체 재직인원 표기)

※ 제출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 산업체부담금 납부 관련 사항

- 산업체는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함(「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6항)
-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의 매학기 산업체 부담금 납부 사실을 법인 명의 계좌입금, 예산편성내역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 제22조 제5항)

■ 지원자 유의 사항

- 접수 완료 후에는 접수취소가 불가능하며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입학원서 등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 또는 입학에 취소할 수 있음
- 입학 후 졸업확인을 위한 서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졸업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학에 취소할 수 있음
- 모집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 대학 '계약학과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입학 문의

학과	학과실	담당교수
복지융합과	061)270-2576	박경래 061)270-2665
정원조경과	061)270-2652	강창원 061)270-2770